

1. 제정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등의 착수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를 시작한 자가 그 공사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서식 등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 중지·변경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12.31.~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등의 착수 신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등)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1호 법 제18조제2항제1호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7호	경고	-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행위허가(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 인공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치			
면 적 (㎡)			
근 거 법 령			
허 가 일 자	년 월 일	허 가 권 자	
공사(사업) 진 행 사 항	공사(사업) 진척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사업시행자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행정처분 내용	
공사중지, 항만 시설 사용중지 기간	년 월 일로부터 개월
행정처분 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m ²		
사 업 목 적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토지이용계획 (m ²)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 모							
자금조달계획	내 자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소계
주요변경사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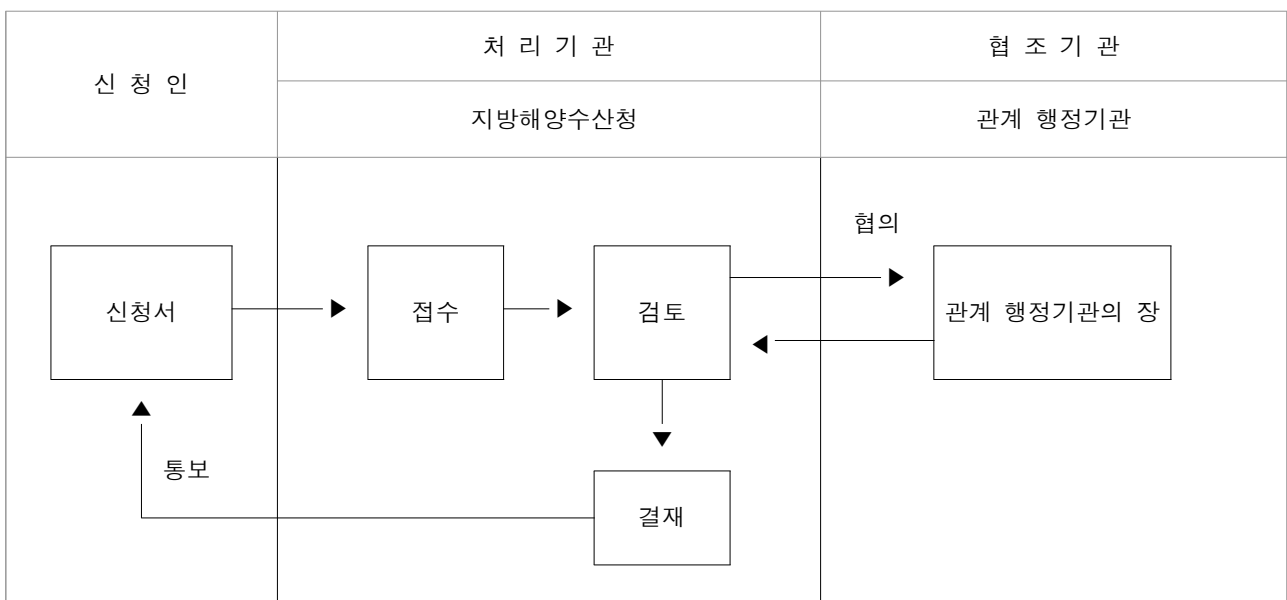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첨부서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토지출입(일시사용) 통지서

출입 또는 사용 목적	
출입 또는 사용 기간	
제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의 종류	.부터 (일간) .까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출입(사용)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부터까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적 인

(앞면)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사진 (3.5cm × 3cm)	
성명			
주소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위 사람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74mm × 52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뒷면)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에 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잃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시행기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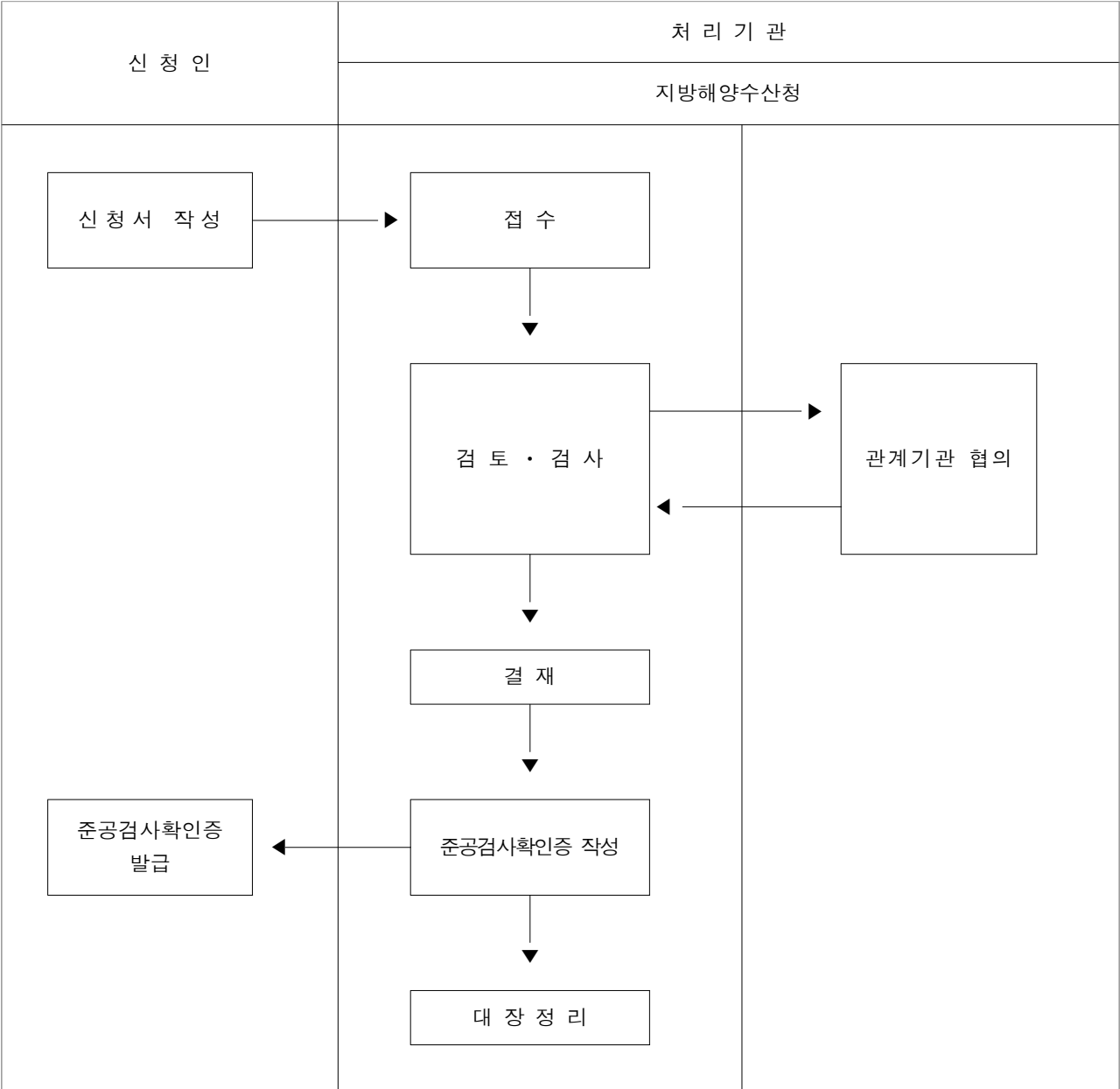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 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지적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성 명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귀하가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2. 실시계획 승인일
3. 위치
4. 시행면적 m^2
5. 준공 연월일
6. 준공인가 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적 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사업 내용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준공 전 사용사유			
준공 전 사용기간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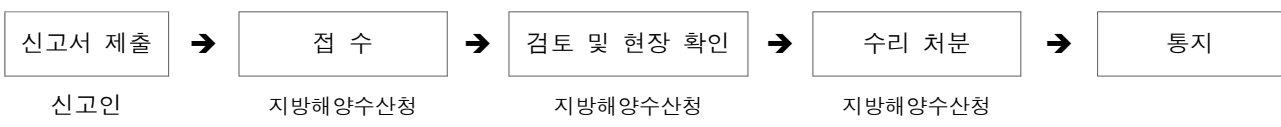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기간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전체공정 검토	→	결재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